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지방
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도모하거나, 직위를 남용하거나 타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
을 하지”를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
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은”을 “의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가져와서”를 “초래해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윤리강령) <신 설></p> <p><u>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u></p> <p>1. 2. (생략)</p> <p>3. <u>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위를 남용하거나 타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u>-----</p> <p>-----</p> <p>-----</p> <p>----.</p> <p>제2조(윤리강령) ① <u>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u>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2. (현행과 같음)</p> <p>3. -----</p> <p>----- <u>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u> -----</p> <p>-----</p>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생략)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9. (생략)

10.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와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③ (생략)

-----.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5. (현행과 같음)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초대해서-----
-----.

제5조(검직신고) ① -----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주소	보수	(택일) 연월일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주소	보수	(택일) 연월일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귀하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 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